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6호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차용자와 대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차용자와 대여자의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용자(이하 **乙**이라 칭함)” 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2. “대여자(이하 **甲**이라 칭함)” 라 함은 차용자와의 계약 체결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이윤은 받는 자를 말한다.

제 4조 [실명거래]

- ① 갑과 을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 ② 갑은 을이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③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

- ① 을은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갑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 6조 [계약의 성립]

을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갑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 7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을(대부업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2. 갑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3. 계약일자
4. 대여금액
5. 이자율
6. 대여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7. 대여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제 8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여에 제반 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9조 [계약서의 교부 등]

- ①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지참 완료 후 갑은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계약서 및 계약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 10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이행장소 · 준거법]

- ① 대여의 이행장소는 구속하지 아니 하고, 송금방법은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약정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일까지의 원금과 일할 계산한 이자를 을은 갑의 계좌에 입금한다. 갑이 해지한 경우, 해지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조 [약관의 변경]

- ① 을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알리고, 갑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이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 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서면이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4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여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을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